제8호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소관부서	업 무	비공개대상정보	근거 또는 사유
도시개발과, 건축과, 도시항만재생과	o도시 및 지역개발계획	o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, 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 o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 정보 o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정보	사업 공표전 공개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